



『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』 요약 상품설명서

[기본정보]

(2024.06.03 기준, 세전)

구 분	내 용		
상품특징	병역의무 복무자의 전역 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목돈마련 비과세적금		
적립 방법	자유적립식		
가입대상	<p>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무요원, 대체복무요원.</p> <p>① 1인 1계좌 (단,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 후 재가입불가) ②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장병 ③ 「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」 원본을 제출한 장병 ※ 비대면 신규시 자격검증서비스로 검증된 「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」를 제출한 장병 </p>		
계약기간	<p>1개월 ~ 24개월 (일단위) - 만기일은 전역(또는 소집해제) 예정일과 일치 (단,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능)</p>		
적립한도	월 10원 ~ 20만원 (원단위) ※판매금융기관 합산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		
적용금리	기간	1개월~12개월미만	12개월~15개월미만
	금리	최저 연3.50% ~ 최고 연4.20%	최저 연4.00% ~ 최고 연4.70%
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+ 우대금리 적용			
1% 이자지원금 매칭지원금	<p>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 ※ 지원금 확인서 원본제출 필수 [①전역증 ②병역증 ③병적증명서 ④복무사실 확인서 (복무증 대체복무요원만 가능) 中 택1] ※ 단, 1%이자지원금은 '23.12.31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</p>		
세제혜택	○	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가능	
예금담보대출	○	납입액의 100%까지 가능	
예금자보호	○	원금과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	

[유의사항]

※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(1599-1111,0,1)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중도해지금리	기간	중도해지금리
	1개월 미만	연 0.10%
	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연 0.15%
	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연 0.20%
	6개월 이상	가입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× 차등율 ^(주1) × 경과율 ^(주2) (단, 연 0.20% 미만 시 연 0.20% 적용)(단위 : 연,%)
	(주1) 차등율 : 경과기간(6개월이상)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- 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 경과시 60%, 9개월 이상 ~ 11개월 미만 경과시 70%, 11개월 이상 경과시 90%	
(주2) 경과율 : 경과일수 / 계약일수 (단,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) ※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세째자리까지 적용 (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) (예시) 중도해지금리가 1.564721%로 산출시 1.564%로 적용		
만기 후 금리	1개월 이내 :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/2 1개월 초과 :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/4 ※ 단,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, 지급당시 정기적금 6개월제 기본금리 기준 적용	
예금해지	영업점에서만 가능	
※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,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		

『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』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.
-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(예시:유선 가입시는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등)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 :『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』
- 상품특징 : 병역의무 복무자의 전역 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목돈마련 비과세적금

2 거래 조건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(증서)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(2024.06.03 기준, 세전)

구 분	내 용		
가입대상	<p>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연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무요원, 대체복무요원</p> <p>① 1인 1계좌 (단,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불가) ②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장병 ③ 「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」원본을 제출한 장병</p> <p>※비대면 신규시 자격검증서비스^(주1)로 검증된 「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」를 제출한 장병</p> <p>(주1) 자격검증서비스 :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본인의 금융분산ID(결제원과 각 은행이 기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, 디지털증명서를 발급·검증·관리하는 시스템)를 통해 '자격검증정보', '자격검증확인' 등을 거치는 일체의 서비스</p>		
적립방법	자유적립식	가입금액	20만원 이하(원단위, 0원 신규 가능)
거래방법	• 신규:영업점, 스마트폰뱅킹 (연역병,상근예비역 限) • 해지:영업점	적립한도	월 10원 ~ 20만원 (원단위) ※판매금융기관합산월 최대 40만원 한도내
계약기간	1개월 ~ 24개월 (일단위) -만기일은 전역(또는 소집해제)예정일과 일치 (단,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가능)		
이자지급방식	만기일시지급식: 만기(후)해지 시 이자를 지급		
기본금리	계약기간	1개월 ~ 12개월미만	12개월~15개월미만
	기본금리	연 3.50%	연 4.00%
	연 5.00%		
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적용			
우대금리 (최대 연 0.70%)	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, 최대 연 0.70%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(단, 종도해지시 미적용)		
	우대 항목	내용	
	주택청약 종합저축 (연 0.50%)	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한 경우 (예시) '24.01.14 적금 신규시 '24.04.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	

	<p>군급여이체 또는 카드결제 (연 0.20%)</p>	<p>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회 이상 군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, 하나카드 (체크/신용) 결제 실적이 3회 이상 있을 경우 (※ 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실적은 월1회만 인정하며, 군급여이체 실적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군인증명공제이체에 한합니다)</p>										
		<p>입금 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(원미만 절사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기간</th><th>중도해지금리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개월 미만</td><td>연 0.10%</td></tr> <tr> <td>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</td><td>연 0.15%</td></tr> <tr> <td>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</td><td>연 0.20%</td></tr> <tr> <td>6개월 이상</td><td>가입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^(주1) x 경과율^(주2) (단, 연 0.20% 미만 시 연 0.20% 적용)(단위 : 연, %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기간	중도해지금리	1개월 미만	연 0.10%	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연 0.15%	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연 0.20%	6개월 이상	가입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^(주1) x 경과율 ^(주2) (단, 연 0.20% 미만 시 연 0.20% 적용)(단위 : 연, %)
기간	중도해지금리											
1개월 미만	연 0.10%											
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연 0.15%											
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연 0.20%											
6개월 이상	가입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^(주1) x 경과율 ^(주2) (단, 연 0.20% 미만 시 연 0.20% 적용)(단위 : 연, %)											
중도해지금리		<p>(주1) 차등율 : 경과기간(6개월이상)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- 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 경과시 60% 적용, 9개월 이상 ~ 11개월 미만 경과시 70% 적용, 11개월 이상 경과시 90% 적용</p> <p>(주2) 경과율 : 경과일수 / 계약일수 (단,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) ※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세째자리까지 적용 (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) (예시) 중도해지금리가 1.564721%로 산출시 1.564%로 적용</p>										
만기 후 금리		<p>1개월 이내 :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적금 기본금리의 $\frac{1}{2}$ 1개월 초과 :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적금 기본금리의 $\frac{1}{4}$ ※ 단,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, 지급당시 정기적금 6개월제 기본금리 기준 적용</p>										
일부해지	불가											
		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										
이자계산방법		<p>[1회차] 납입금액 x 약정금리 x 이자계산일수(납입일~만기전일)/365</p> <p>+ [2회차] 납입금액 x 약정금리 x 이자계산일수(납입일~만기전일)/365</p> <p>+ [3회차] 납입금액 x 약정금리 x 이자계산일수(납입일~만기전일)/365</p> <p>⋮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[만기전일]</p>										
만기앞당김지급		자유적립식 예금으로 만기앞당김 지급이 불가합니다.										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(일부해지 포함)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. 										

세제혜택	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	① 『조세특례제한법』 및 『농어촌특별세법』에 따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, 추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	② 단,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,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 수 있으며,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.
	③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	④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.
양도 및 담보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동명의 가입 및 양도 불가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질권설정이 가능하며,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가능
자동이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적립한도 이내에서 자동이체 등록 가능하며,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군급여공제가 가능합니다.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며,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. (단, 자동이체를 말일로 지정할 경우, 신청 은행의 자동이체 정책에 따라 익영업일에 입금될 수 있으며, 월 저축 제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 익월 한도에서 차감됩니다)
계약해지방법	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.
예금 해지 시 불이익	만기 전 예금해지시 계약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.
통장발행	통장 미발행 가능합니다.
연계·제휴서비스	해당사항없음
휴면예금 및 출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“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”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위법계약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
자료열람요구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	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99-1111, 0, 1), 고객의 소리(080-933-1111)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예금자보호여부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해당</p>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0070C0; color: white; padding: 2px 10px; border-radius: 5px;">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</div> <p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</p>

3 1% 이자지원금

구 분	내 용
1% 이자지원금	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해지시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입니다.
지급대상	<p>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합니다.</p> <p>① 만기일 이후 해지(단, '21.10.14 이후 만기도록하는 계좌에 한함)</p> <p>② 지원금 확인서 원본 제출 필수</p> <p style="color: blue;">[①전역증 ②병역증 ③병적증명서 ④복무사실 확인서 (복무증 대체복무요원만 가능) 中 택1]</p>
지급금액	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 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%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. (단, 1%이자지원금은 '23.12.31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)

- | | |
|------------|--|
| 알아두실
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%이자지원금 시행일은 2021년 10월 14일이며, 시행일 이후 만기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 • 확인서 미제출로 1%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,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. • 『조세특례제한법』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, 1%이자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 •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|
|------------|--|

4

매칭지원금 (사회복귀준비금)

구 분	내 용
매칭지원금	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입니다.
지급대상	1% 이자지원금 지급대상 및 조건과 동일합니다.
지급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원금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 • ['23년 납입한 원금 + 이자소득 + 1% 이자지원금] 합산금액의 71% • ['22년 납입한 원금 + 이자소득 + 1% 이자지원금] 합산금액의 33%
지급시기 및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칭지원금은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, 만기 해지시 은행에 제출한 입금 회망 계좌(본인명의 당행 입출금통장)으로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 • 만기 해지후 입금까지 최대 3개월이상 소요될수 있으며, 입금시까지 거래정지(압류 등), 계좌 해지 등의 처리 불가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. • 입금일정 등 관련 상세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알아두실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칭지원금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, 시행일 이후 만기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 • 확인서 미제출로 매칭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,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. • 『조세특례제한법』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,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 •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변경에 따라 시기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,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지원금액 변경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병역법 시행령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5

유의사항

- 이 예금의 신규 가입시 「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」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※비대면 신규시 자격검증서비스^(주1)로 검증된 「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」를 제출한 장병만 가입 가능합니다.
- (주1) 자격검증서비스 :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본인의 금융분산ID (결제원과 각 은행 이 기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, 디지털증명서를 발급·검증·관리하는 시스템)를 통해 '자격검증정보', '자격 검증확인' 등을 거치는 일체의 서비스
- **중도해지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며, 비과세 및 1% 이자지원금과 매칭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**
- 1%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 관련 내용은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, 적금 해지시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. 지원금 관련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(02-3146-6544,6545) 및 병무청 (042-481-3043, 사회복무요원 限)으로 문의바랍니다.
- 이 예금은 '하나은행'과 '국방부(병무청)' 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이 예금을 만기해지한 고객은 재가입이 불가합니다.
- 이 예금의 우대금리 제공을 위한 최소 유지기간보다 적금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 우대금리가 미적용됩니다.

이 예금은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(1599-1111,0,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